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 요강[안]
[3년제]



동남보건대학교
DONGNAM HEALTH UNIVERSITY

신입생 등록 및 복수지원 주의사항

1. 전문대학 지원방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 지원방법

- 전문대학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음

☐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간의 복수 지원 가능

☐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총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가.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정시 및 추가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음

나.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정시 및 추가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음

2 신입생 등록

☐ 이중등록 금지

-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총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예치금 가 등록을 정식등록으로 처리함) (※등록이라 함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총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총원 합격 대학에 등록해야 함

☐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 정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 내 또는 대학별로 설정한 등록기간 내 등록 처리하며, 정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총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총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총원 합격 대학에 등록해야 함.

3. 대입지원방법위반자에 대한 조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

☐ 복수지원위반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함.
- 전문대학 및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원(한국,광주,대구경북,울산),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 고등교육법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관리팀(031-249-62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학과)	주야	학제	모집인원(명)	
			재외국민	초·중·고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방사선과	주	3	1	모집인원 제한없음
임상병리과	주	3	1	
식품영양학과	주	3	1	
식품제약과	주	3	1	
물리치료과	주	3	1	
바이오환경보건과	주	3	1	
치기공과	주	3	1	
치위생과	주	3	1	
안경광학과	주	3	1	
응급구조과	주	3	1	
뷰티케어과	주	3	1	
작업치료과	주	3	1	
보건3D프린팅융합과	주	3	1	
아동보육복지과	주	3	1	
세무회계학과	주	3	1	
항공서비스과	주	3	1	
글로벌관광서비스과(일본어전공)	주	3	1	
글로벌관광서비스과(중국어전공)	주	3	1	
계			18	

II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1.01.18.(월) 10:00~01.25(월) 16:00	• 원서 및 제출서류는 우리 대학 입학관리팀에 직접제출
합격자 발표	2021.02.05.(금) 14:00	• 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에 발표 및 개별 통보
합격자 등록	2021.02.08.(월)~02.09(화) 16:00	•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III

전형료

구분	전형료	비고
전형료	20,000원	• 원서 접수시 직접 납부

IV

지원자격

IV-1. 중·고교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1. 자격요건

-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을 수료한 자
- 해외근무자는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학생 및 배우자(해외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의 경우)와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를 의미함
 - 졸업예정자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졸업해야 함 (단, 일본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는 2021년 3월)
 - 중·고교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수학의 경우 1개 학기(6개월)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체류요건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가.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해외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의 경우)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나.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해외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의 경우)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3.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가. 국내 소재(외국군 기지 포함)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해외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나.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단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라.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의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봅니다.)
- 마. 외국 소재 고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 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 하는 경우, 해당 외국 소재 고교 과정은 지원자격 취득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바. 지원 자격 심사는 기본적인 심사와 더불어 학력조회, 출입국사실조회 등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서류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지원자에게는 개별 연락합니다.
- 사. 교육부의 지침이 있을 경우 전형요강이 발표된 후에도 지원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Ⅳ-2.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1. 자격요건

- 가.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로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나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단, 일본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는 2021년 3월)로서,
- 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자

2.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가. 국내 소재(외국군 기지 포함)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해외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나.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의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봅니다.)
- 다. 초·중·고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에 한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외고등학교의 고교 졸업 여부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제를 기준으로 각 해당국별 학제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라.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마. 교육부의 지침이 있을 경우 전형요강이 발표된 후에도 지원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V 지원자격 심사기준

1. 외국학교 인정기준

-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제외됨
- 대한민국 및 해당국가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대학의 교육과정만을 인정하며, 유아원/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의 과정,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등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함.
- 부모의 근무국 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한 경우만을 인정하며, 그 외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2. 재학기간 인정기준

- 가.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교의 교육과정(Daycare center,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제외)에 정상적으로 재학하여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을 인정하며 국내외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일 학년 또는 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 미인정)

※ 한국학제 해당 외국학교 초·중·고교 기준표

초	중	고
1 ~ 6학년	7 ~ 9학년	10 ~ 12(13)학년

- 나.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인정함

학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학제 차이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을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해당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해당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 이수해야 인정)	
13학년제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해당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수

- 다.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에 의한 월반(전, 편입학시 월반은 미인정)과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학교 재학연수가 초·중·고교 12년 전 과정에 미달한 경우 총 1개 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VI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유의사항

1. 지원자격 유형 중·고교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지원 대상 공통 제출 서류

번호	제출서류	공통
1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서식1]
2	출신학교 현황	본교 소정양식[서식2]
3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본교 소정양식[서식3]
4	외국학교 학력조회뢰서	본교 소정양식[서식4]
5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6	중학교 졸업증명서	
7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재학기간 명기)	
8	중학교 성적증명서(재학기간 명기)	

※ 제출서류 유의사항: 7, 8.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에 해당 학교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학기별 재학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재학기간이 명시된 외국중·고등학교 학사일정표 또는 기타 참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학사일정표에는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홈페이지 출력물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 (학사일정표는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불필요))

2. 지원자격 유형 중·고교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지원 대상별 제출 서류

번호	제출서류	공무원 자녀	상사 주재원 자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자영업자 자녀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	○	○	○
	지원자, 보호자 배우자					
2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
	지원자, 보호자 배우자					
3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	○	○	○	○
4	보호자 재직증명서(외국체류 경력 증명내용 기재)	○	○	○	○	
5	해외지사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6	현지법인 법인등록증 사본				○	
7	현지법인 활동 입증 서류(법인세 납부증명서)				○	
8	자영업 허가서 사본					○
9	자영업 활동 입증 서류(개인 소득세 납부증명서)					○
10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만 제출)			○		
11	부모의 이혼/사망 시 해당 사항 입증 서류			○		

※ 제출서류 유의사항: 보호자는 부모 중 외국 근무자를 의미하며, 배우자는 근무자 아닌 부모를 말함

※ 번호 7. 현지법인 활동 입증 서류는 개인소득세 납부 내역 불인정

※ 번호 11. 부모의 이혼/사망 시 해당 사항 입증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며, 부모의 이혼의 경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의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를 제출

3. 지원자격 유형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지원 대상 제출 서류

번호	제출서류	공통
1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서식1]
2	출신학교 현황	본교 소정양식[서식2]
3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본교 소정양식[서식3]
4	외국학교 학력조회뢰서	본교 소정양식[서식4]
5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6	중학교 졸업증명서	
7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8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재학기간 명기)	
9	중학교 성적증명서(재학기간 명기)	
10	초등학교 성적증명서(재학기간 명기)	
11	출입국사실증명서(지원자 본인)	
12	여권사본	
13	어학능력 입증서류(TOPIK)	

※ 제출서류 유의사항: 번호 8, 9, 10.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에 해당 학교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학기별 재학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재학기간이 명시된 외국고등학교 학사일정표 또는 기타 참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학사일정표에는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홈페이지 출력물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 (학사일정표는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불필요))

4.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서식1)~(서식3)는 입시요강에 포함되어있는 서식에 자료를 입력하여 출력한 후에 지원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제출 서류에 견출지나 인덱스 탭을 사용하여 해당 서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모든 성적표에 해당 학년 및 학기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에게 대한 해당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됨
-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급기관(또는 해당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본교의 원본 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외국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가 공증기관에서 사실확인공증이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에서 재학/졸업한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및 기타 공문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단,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재외한국교육기관으로 인정한 학교가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조기졸업, 월반 또는 학기 결손(전입/편입으로 인한 월반은 제외),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해당 학교(또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식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원본 서류가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원본과 함께 해당국가 또는 국내 공증기관이 공증한 한글번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제출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을 인정함. 단,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외국에서의 재학, 근무, 또는 거주 기간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 현지법인 법인등록증, 자영업 허가서, 현지법인이나 자영업의 활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지원자의 지원자격 취득기간과 같은 시기의 활동 내역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함
- 최종 합격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1.02.26(금)까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단, 학년 개시일이 대한민국보다 1개월 낮은 국가(일본, 필리핀 등)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1.03.26(금)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일정기간 재학하였으나 졸업 또는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학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재학기간이 명시된 성적증명서로 재학 사실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음)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당국가 소재 대한민국 대사(영사)관에서 발급하는 해외 거주(체류)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원이 발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부모가 근무하는 국가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3국에서 재학한 지원자는 부모 거주국의 대한민국 대사(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제3국 수확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교에서 지원자격 심사 등을 위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본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5.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 제출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은 협약가입국가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발급대상 문서는 영사확인 절차를 거치는 대신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대상 서류: 외국에서 재학/졸업한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기관: 해당국가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부)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현황 (2020 기준)

지역	국가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트, 브루나이,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일본,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팔라우, 피비, 필리핀, 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 관련문의: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0404.go.kr>) 영사콜센터: 02-3210-0404

6. 재외한국교육기관 안내 (2020 기준)

국별	학교명
일본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중고등학교, 오사카금강학교, 건국한국학교
중국	북경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학교, 상해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홍콩한국학교, 연대한국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웨이하이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국제학교, 광저우한국학교
대만	타이베이한국학교, 까오슝한국국제학교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한국학교, 젯다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국별	학교명
태국	방콕한국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이란	테헤란한국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캄보디아	프놈펜한국국제학교

※ 관련문의: 재외교육기관포털 홈페이지(http://okep.moe.go.kr/html/page.do?htmlId=14&menu_seq=102)

VII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서류심사 100%

2. 등점자 처리기준

- 제1순위: 해외 재학기간(월 단위)이 긴 자
- 제2순위: 연소자

3. 전형료 반환

- 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단,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을 반환함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됨)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라 반환할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잔액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2021.04.30(금)까지 반환함
- 반환 전형료는 입학원서 접수 시 입력한 전형료 반환계좌로 받거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반환받을 수 있음. 단, 금융기관의 계좌로 반환 받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차감될 수 있으며, 이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4. 기타 안내사항

-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경우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으나, 모집단위별 현황을 고려하여 약간 명을 선발함

VIII 지원자 유의사항

1. 입학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재외국민 특별전형 내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학과)만 지원이 가능함
- 입학원서에 여권용(3.5cm×4.5cm) 사진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이미지 파일 가능)
- 입력사항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전형기간 중 연락이 가능한 국내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증 수령 후에는 입력 사항 변경 및 접수 취소가 불가능하며, 전형료도 반환되지 않음
- 문의: 동남보건대학교 입학관리팀(031-249-6262)

2. 전형관련 및 기타 유의사항

- 원서접수 완료(접수증 수령) 이후에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천재지변, 질병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음 (전형료의 면제·감액·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함)
- 졸업예정자가 당해 연도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는 입학을 취소함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한 경우
- 두 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경우 (등록한 모든 학교의 입학이 취소됨)
- 모집요강에 있는 금지조항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않음
-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남보건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함
- 원서접수 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동남보건대학교 입학관리팀(031-249-6263)으로 통보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동남보건대학교는 신입생 모집 및 선발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별을 두지 않음.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수학이 불가

- 능한 유전적 질환이나 선천성 질병이 있는 자, 제3자의 지속적 도움이 필요한 자 등)는 수업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대학 학생지원팀(031-249-6231~4)에 상담을 바라며, 학과 특성(현장실습, 실험실습 등)에 따라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1학년 1학기 중에는 군입대 및 질병휴학 이외에는 휴학을 허락하지 않으므로(학칙 제28조(휴학)) 반드시 학사운영팀(031-249-6222~5)으로 문의하기 바람
 - 신입생 모집요강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문의: 동남보건대학교 입학관리팀(031-249-6262)

IX 등록 및 환불 안내

1. 등록

- 2021.02.08.(월)~02.09.(화) 16:00까지 본교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2. 입학포기 및 등록금 반환 안내

- 우리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 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2021.02.26.(금) 15:00까지 우리 대학 입학관리팀을 방문하여 입학포기 및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출과 동시에 포기 처리됨
- 등록금 반환은 입학원서에 기재한 은행 계좌로 반환함
- 등록금 및 전형료 환불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였거나 계좌번호 변경에 따른 등록금 환불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당일 납부한 등록금에 대하여 당일 반환이 불가하며, 등록 다음날 반환함(근무일 기준)
- 학기개시일 이후 등록금 반환신청자는 입학포기가 아닌 자퇴처리 되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반환함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교육부령 제1호]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함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은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함

입학원서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험번호							
(지원자 기재 금지)							

지원자격 유형 (☒ 표시)	① 공무원 자녀	☐
	② 상사주재원 자녀	☐
	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④ 해외현지법인 근무자 자녀	☐
	⑤ 자영업자 자녀	☐
	⑥ 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지원학과	과
------	---

지원자	성명(한글)											성별(☒)	사진 (3.5cm × 4.5cm)	
	성명(영문)											남 ☐ 여 ☐		
	국적(출생국)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출신고교													
	졸업(예정)일	년 월 일												
	체류국가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자택전화			기타연락처1			기타연락처2			
	e-mail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개인정보 활용여부	- 본인은 합격시 입학전형자료를 동남보건대학교에서 활용(학적부 제작 등)함에 동의합니다.(동의 ☒ / 부동의 ☐) ※ 부동의시 원서 접수 불가
SMS 제공 동의여부	- 본인은 동남보건대학교에서 제공하는 e-mail 및 SMS를 통한 정보(입시 및 합격 후 학사정보)의 수신에 동의합니다.(동의 ☒ / 부동의 ☐)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1년 01월 00일 지원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전형료 납부확인 (인)
동남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2]

출신학교 현황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험번호							
(지원자 기재 금지)							

성명	한글		지원학과	
	영문		졸업고교구분	☐ 국내 / ☐ 국외

학년	학기	학기 기 제	지원자의 학기 시작일	지원자의 학기 종료일	학제	학교명	국가	해당학기 성적기재 여부(○/×)	재학증명 첨부여부 (○/×)
1									
2									
3									

※ 지원자는 학기별로 해당학기 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여부와 재학증명서 첨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성적 확인	학교명	학제	학기제	성적확인

특이 사항	내용	학년/학기	사유

개인정보 - 본인은 합격시 입학전형자료를 동남보건대학교에서 활용(학적부 제작 등)함에 동의합니다.
 활용여부 (동의☒ / 부동의☐) ※ 부동의시 원서 접수 불가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01월 00일

지원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서식3]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험번호						
(지원자 기재 금지)						

○ 성장과정, 지원동기, 입학 후 학업계획, 장래희망 등 종합적으로 작성(1쪽 이내)

--

LETTER OF REQUEST

(학력조회의뢰서)

**DONGNAM HEALTH UNIVERSITY****Admissions Management Team**

50, CheonCheon-ro 74-gil, Jangan-gu, Suwon-si, Gyeonggi-do, 16328, Korea

•Phone +82-31-249-6262 •FAX +82-31-249-6269

<http://www.dongnam.ac.kr>*** 지원자 기재**

Name			
Date of Birth(mm/dd/yyyy)			
School Name			
School Information	Address		
	Phone		
	Fax		
	E-mail		
Attendance(mm/dd/yyyy)	From	To	

Subject : Requesting Student Information

Dear, Sir or Madam

The above applicant has submitted educational documents issued by your institution to our university. We ask to verify the accuracy and authenticity of the copies of the enclosed documents. In order to process the application, we need your confirmation of her enrollment. I would appreciate it very much if you could fill out the below and send it to us via fax or e-mail.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cooperation. We look forward to your response at your convenience.

Sincerely yours,

President of Dongnam Health University

*** Questions to verify student information (해외학교 회신란)**

• Please select one of the following statements regarding the above

☐ Yes, I confirm the student's information and attendance☐ No, I cannot confirm the above

Verifying Date	
Signature of Institution Official	